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다음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보수 등 근무조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제1조(약정당사자)

(임 용 권 자) 성북구청장

(임용예정자) 성 명 : 최은미

주민등록번호 : *****

제2조(임기제공무원의 담당업무 및 성과계획) 약정기간 동안 “임용예정자”가 담당할 업무 및 성과목표는 별지 성과계획서와 같다.

제3조(근무기간) 근무기간은 2016년 05월 21일부터 2017년 05월 20일까지로 한다.

제4조(주당 근무시간) 주 35시간

제5조(신분)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

제6조(보수지급액 및 보수지급방법)

1. 연 봉 : 21,166,000원(월 1,763,830원)
2. 수 당 : 봉급 외 제수당은 공무원 보수 관련 법령 등에 의거 지급함
3. 지급방법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함

제7조(근무실적평가) “임용권자”는 약정서 제2조에 규정된 담당업무 및 성과목표를 기준으로 하여 “임용예정자”에게 약정내용의 변경 및 근무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수시평가를 할 수 있다.

제8조(약정의 해지) ① “임용권자”는 “임용예정자”가 동 약정서 제7조에 의한 근무 실적 평가결과 불량으로 판정된 때에는 약정기간에 불구하고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임용예정자”가 근무기간 만료 전에 임용약정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한 근무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임용권자에게 임용약정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복무) “임용예정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기관에 근무하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내지 제58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성북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의 국가승계) “임용예정자”가 그 업무수행과정에서 한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임용권자”가 승계한다.

제11조(기타 채용조건)

- ① “임용예정자”는 지방공무원 규정 등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임용예정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임용권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③ “임용예정자”는 법령 및 약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12조(해석) 본 약정서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임용권자”의 해석에 의한다.

제13조(임기제공무원의 채용조건에 관한 특례)

본 약정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6년 5월 일

“임 용 권 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인)

“임용예정자” 성 명 : 최은미 (인)

주민등록번호 : *****